
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건의

2021. 6

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건의

□ 현 황

- 선제적 사업재편을 활성화하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과세특례를 비롯하여 세제, 금융, R&D 등 다양한 지원정책* 마련

* 사업재편승인기업 지원제도 : 상법·공정거래법 절차 간소화, 세제지원(법인세 과세이연, 관세 분납,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등), R&D사업 우대, 금융 및 자금지원 등

□ 문제점

-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'19년 신산업진출 기업에 사업재편을 허용하고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용가능한 세제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신산업진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
- 탄소중립을 비롯하여 ESG경영이 확산되면서 내연차 부품업체의 사업재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, 세제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할 경우 미래차 산업으로의 재편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

<기업 규모별 사업재편 승인 추이(단위:개사)>



* 사업재편승인기업 리스트(기업활력법 종합포털)를 토대로 가공

- 특히, '20년 이후 중견기업은 96.9%가 신산업진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등 다수의 지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익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세제지원을 통한 사업재편 촉진 필요

- 또한 부실징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*하여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다수 과세특례 제도가 올해 일몰이 예정**되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우려

* 부실징후기업 추이(개) : ('16)2,637→('17)2,906→('18)2,952→('19)3,307→('20)3,508
(출처 : 금융감독원,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, '20.12.29)

** '21년 일몰예정 사업재편 세제지원 : 조특법 제121조의26~31, 지특법 제57조의2

-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조속히 적응하고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

* 기업이 선호하는 사업재편 지원제도 : 세제지원(41.2%),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(28.6%), 신사업진출 규제애로 해소(17.0%), 절차 간소화(13.2%) 順(대한상의, 사업재편 지원 제도에 관한 기업의견 조사, '15.10.6)

□ 건의내용

-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 - 기존 사업 재산을 매각하여 신산업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, 자산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
 -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감면
 - * 유사입법례 :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기업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(지특법 제75조의3)
-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규정 개선
 - (1안) 과세특례 상시화 / (2안) '24.12.31까지 일몰연장